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참고사항 및 필수 준수사항

1 내국인 사전 구인 절차(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전)

1. 내국인 구인절차 선행 필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요건)

- 내국인 우선 고용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 진행을 진행하였음에도 인력이 부족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가능
- 내국인 구인노력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에 근무하고자 하는 내국인이 있을 시 내국인 우선 고용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 우선 고용 (내국인의 근로희망 의사 확인 즉시 대상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자격 상실)**

※ 농가에서 내국인 고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인력 자체가 부족하여 인력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함.

2. 내국인 사전 구인절차 과정 (지자체 주관)

가. 구인주체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지자체(시·군)

나. 구인방법

- 필수 : 지자체(도청 및 군청) 홈페이지 게재
- 권고 : 워크넷, 농촌인력중개센터, 도농인력중개서비스,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등 홈페이지에 내국인 구인 공고

다. 구인내용

- 구인기간 : 1주 이상
- 업종 : 계절근로 허용 농·어업 분야
- 인원 :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 이상
- 기타 : 근로시간, 보수, 숙식제공 여부를 모두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게재

라. 기타사항

- 지자체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 시 구인광고를 입증하는 서류와 최종 구인 실적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증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 구인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불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인권침해 행위가 없어야 함.
- 필수 준수 사항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1. 적절한 주거 환경 제공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나. 숙소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 숙소 내부에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숙소 내부 잠금장치 보유
- 취사(炊事) 도구, 침구류,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필수 구비

다.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을 준수**하고, 숙소 시설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준의 금액을 징수**하되, 다인실의 경우 공동사용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금액 징수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금액을 명시한 경우 징수하되, 초과 징수 금지)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임금의 20%	월 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시	월 임금의 15%	월 임금의 8%

- 임금과 숙식비는 **별도 정산**되어야 함
 -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숙식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붙임11】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사전 공제 후 임금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숙식비 공제금액(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숙식비 공제 동의서’【붙임11】를 제출받아 보관(근로계약서상 숙식 정보와 공제 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 대비)

※ 고용주는 원본, 지자체는 사본 보관

- 근로계약서상의 숙식정보와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 소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2.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즉시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재해 발생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익 보장 및 농·어가의 부담 완화 목적

3.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월 실제 근로시간 × 시간급(9,62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4. 임금은 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도주 이탈 방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봉급통장을 고용주가 보관하거나,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모았다 출국 시 일괄 지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5.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지급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휴일 근로 명시
 -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 통상임금의 150% 이상 지급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0% 이상 지급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200% 이상 지급
- ※ 1일 30분 내지 1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월별 합산시간으로 지급
- 시간외 근무에 대해 반드시 별도의 임금 지급 (선물, 음식 등 제공으로 대체 불가능)

6. 근로시간 준수

- 1주 내 근로시간 한도(휴게시간 제외) : 40시간
- 1일 내 근로시간 한도(휴게시간 제외) : 8시간
 - ※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당사자 간 합의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 후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근무 가능

7. 휴게 및 휴일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 보장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매 30일마다 최소 2일 이상 휴일을 보장 (최소한의 휴식권 보장)
 - 당사자 간 합의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 후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근무 가능
 - 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금지

8. 최소 근무일수 보장

- 고용일수는 계약상의 총 근무일의 75% 이상 보장
 - 기준 : 주당 5일 근무, 2일의 휴일
 - ※ 고용일이 90일인 경우 최소 68일(75%) 고용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농·어가가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최소 근무일수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 사유가 됨.

9. 근무처 이동 제한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초 계약한 농·어가에서만 근무 가능
- 계약한 농·어가에서 일정기간 일이 없어 다른 농·어가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10.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보관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됨.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상변동 시 신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며,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요청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상변동(입·출국, 이탈, 기타 사고 등) 발생 시 즉시(3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12.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작업장이나 소재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지 않도록 관리

13. 인권침해 금지 : 폭행(언어폭력 포함),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금지

14. 기타 지시사항 준수 : 실태 점검 협력,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시사항 준수

15. 각종 설문 및 연구 시 협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설문조사 및 연구 시 협조

※ 농업 분야

○ 허용 인원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농업조합·법인은 자경(공동경작)하고 있는 농지 면적 기준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재배면적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벼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1.06미만	1.0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꽃감 가공	70점 미만	70~80점 미만	80~90점 미만	90~100점 미만	100점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복수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조합·법인은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

[붙임10]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개월 - 근무처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YY/MM/DD) to (YY/MM/DD)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딸기 재배, 돼지사육 및 축사관리,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pig care and barn management, fishing and oyster farming, etc.)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월 ()시간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기상 요인에 따라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hours/month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s for the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5. 휴게시간	1일 ()회, ()시간 ()분	
5. Recess hours	() times for a total of ()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 주 1회, [] 월 4회, [] 기타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6. Holidays	[] 1 time/week, [] 4 time/month, [] etc.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